

Q

산안법제30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공무원 일때, 누가 교육을 시행하며,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하는지요?

A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의 규정)에 의거 공공행정기관중 일반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 제15조(안전관리자등)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바 안전보건교육을 받거나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선 현업행정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의 우체국, 철도청의 지역사무소·철도차량정비창등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2. 만약, 귀하가 소속된 기관이 현업기관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규정에 의거 소정의 교육을 산업안전공단 등 교육기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2(산업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교육은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교육이수 의무는 없습니다.

Q

현재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준공은 2005년도이며 현재 교량 4개소를(1999년도) 완료하였고 4개소 교량중 1개소 교량에 대하여 2002년도 2월 21일 감사원 감사관으로부터 공사현장 수감시 교량의 설치된 교좌장치(1999년도 시공완료) 시공상태를 점검받기 위하여 교량 교각부에 가설 경사로의 안전난간 및 타포린을 설치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안전시설비 설치 인건비로 안전관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작업자가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각부 교좌장치 주변을 청소하였다면 발생한 안전난간 및 타포린설치인건비(1.7인 : 81,500원)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시에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1-22호)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다만 별표2의 사용내역 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교량 교각부에 설치한 안전난간 및 타포린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일 경우에는 그 설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청소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저희 현장은 주택공사 발주현장으로 국민주택규모(25.7평) 미만 매입부가가치세 불공제 현장으로 부가가치세가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않된다고 알고있는데 상기현장의 경우 또한 안전관리비로 쓸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귀하가 질의하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가가치세 사용여부는 매입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와는 무관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시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에 따라 사용여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총원가구성 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Q

연간공사 단가(17억)계약을 체결하고, 단가금액내에서 여러차례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공사장소도 계약시마다 달리하여 공사가 진행중이고 공사기간 또한 건건이 발생되고 계약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계약공사는 안전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 경우 총단가 계약금액으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가계약 범위에서 건건이 이루어지는 계약에 대해서 기술지도 계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전기공사의 단가계약공사는 건건이 발생하는 단위 공사별로 적용하며,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공사기간이 3월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총공사금액이 1억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